

수 신 : 정회원사

참 조 :

제 목 :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시행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국토교통부 「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」이 개정 (국토교통부 예규 제409호)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□ 개정 주요내용

○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

- 지장물 철거, 토석의 운반, 사토 운반,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(안 제4조 제1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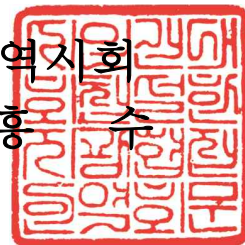
*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

붙 임 1.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안 1부.

2.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 전문 1부. 끝.

※ 붙임 문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(incheon.kosca.or.kr) - 협회공문 참조바랍니다.

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
회 장 조 홍 수



담당자 사원 최현탁 부장 계박사

시행 전건협 인천 제626호(2026. 8. 5)

우 21574/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(구월동, 전문건설회관)/ <http://incheon.kosca.or.kr>

전화 032-428-7331 / 전송 032-428-7334 / 전자우편 qrt9373@kosca.or.kr